

審 查 報 告 書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8. 12. 17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8. 12. 18

라. 上程日字 : 1998. 12. 21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春煥)

가. 提案理由

-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6조 “회계공무원”에 대한 규정중 기금출납원의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

나. 主要骨子

-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기금출납원인 “재난관리계장”의 명칭을 바뀐 직제규칙에 맞게 “재난방재담당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생략

5. 討 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.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41 호
의결 년 월 일	1998. 12. 24. (제 36 회)

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 12. 17.

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7.

제출자 : 서산시장

1. 제안이유

-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6조 “회계공무원”에 대한 규정중 기금출납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함.(안제6조2항)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재난관리계장” 을 “재난방재담당”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</p>	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u>재난방재담당</u>-----.</p>